

「코로나-19 관련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에 따른 예외지침」

□ 목적

- 그간 경기·경북 등 지역별 실시되었던 요양시설의 예방적 격리조치가 집단감염 예방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권고됨에 따라, ‘예방적 격리’ 실효성 제고를 위해 ‘긴급돌봄 제공 원칙’에 대한 예외 지침 마련

□ ‘예방적 격리 시행 기관’ 예외 지침

① (대상기관) ‘예방적 격리’를 시행하는 노인요양시설(공동생활가정 포함)과 병설 운영하는 주야간보호기관에 한정

*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격리 조치를 의미하며, 이 경우 지자체에 제출한 예방적 격리 신청서 또는 시설장 판단 하에 예방적 격리를 실시한 상황과 사유를 기록·보관하여야 함.

** 시·도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단기보호기관이 ‘예방적 격리’를 실시하는 경우 동 지침을 적용함

② (예외기준) 원칙적으로 휴원 안내를 하고, 긴급돌봄을 전제로 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시행하여야 함. 다만 예외적으로,

- ▲ ①의 대상기관에 한해 ▲ 시설과 물리적 장소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 ‘예방적 코호트 격리’를 위한 목적으로 ▲ 시설장의 판단 하에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휴원 안내만 실시 후 전면 휴원을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‘코로나19 특례비용’ (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%(전액 공단부담))을 인정

※ 이 경우도 예상치 못한 긴급돌봄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‘코로나-19’ 특례비용 산정을 위한 필수 인력은 배치하여야 함.

③ (인정기준)

- 그 외 세부 기준은 「코로나19 관련,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(3차)」(2020.3.6.) II.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 6. 주야간 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지침 ‘코로나 특례비용’ 산정 지침과 동일